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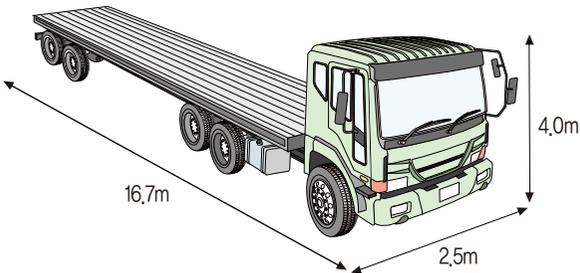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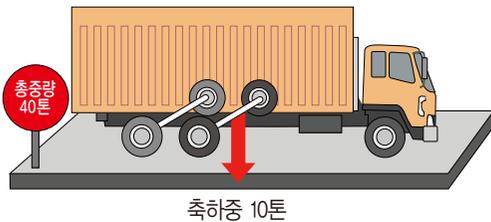
도로법 개정으로  
2010년 9월23일부터  
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 
벌금에서 **과태료 부과**  
변경되었습니다.

◎ **운행제한 대상도로**

서울특별시 모든 도로

◎ **운행제한 대상차량(단속기준)**

- 축하중 10ton 초과차량
- 총중량 40ton 초과차량
- 차량의 폭 2.5m 초과차량
- 차량의 높이 4.0m 초과차량
- 길이 16.7m (연결 굴절차 19m) 초과차량



**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가  
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 
차등 부과됩니다!**

▶ **과태료 부과 기준**  
(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)

위 반 행 위	과태료 금액(만원)		
	1회	2회	3회이상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50	70	100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80	120	160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150	220	300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30		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.0미터 이상 5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50		
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.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	100		
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	500		

※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

**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는  
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!**



-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조작하는 행위
- 바퀴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
- 축의 높이 및 위치를 조절하는 행위
- 단속장비 가장자리에 바퀴를 걸쳐 운행하는 행위
-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
- 그 밖에 비정상적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

▶ **중(重)차량 운행 허가제도 안내**

- **중차량이란?** : 자체 중량이 큰 자주식 건설기계
- **운행허가 대상**
  - 건설기계등록증에 상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자주식 건설기계
- **운행허가 신청**
  - 신청인 → 도로관리청 → 허가서 발급
  - 처리기간 : 협의필요시(10일), 협의 불필요시(3일)
  - 구비서류 :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
차량검사증(또는 등록증)  
차량중량계산표, 운행노선도(1:50만)  
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(필요한 경우 제출)  
기타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서류  
허가신청수수료 : 노선당 5,000원

문의처 : 서울시 교량관리과 ☎ 02-3707-9697